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4
----------	------

발의연월일 : 2020. 8. 6.

발의자 : 김석기 · 박덕흠 · 박대수
구자근 · 송언석 · 정희용
김형동 · 김영식 · 윤재옥
정진석 · 장제원 · 김예지
윤두현 · 박대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그 결과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하면”을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